

### 原告가 販賣한 장갑이 本件 特許權을 侵害했다고 한 被告의 葉書內容은 虛偽事實을 記 한 것으로 被告의 行爲는 不正競争行爲가 되었다는 事例

(大阪地裁 59. 10. 26 判決; 昭和 57年(ワ) 8863號)

#### 1. 事件概要

原告는 競馬騎手用 장갑을 包含한 스포츠用 장갑의 販賣를 業으로 하고, 被告는 競馬騎手用 장갑을 包含한 競馬用品의 販賣를 業으로 하고 있다. 被告는 原告가 販賣한 競馬騎手用 장갑의 바닥面에 使用한 布地(以下 A號 物件이라 한다)는 本件 特許權을 侵害한 것이라는 內容을 記載한 葉書를 原告의 去來先으로 있는 競馬用品販賣店에 發送했다. 이것에 對해 原告는 A號物件은 本件 特許發明의 技術的 範圍에 屬하지 않으므로 被告의 葉書는 虛偽事實을 記載한 것으로서 被告에 對하여 前記行爲의 禁止 및 損害賠償을 請求했다.

#### 2. 判決의 要旨

判決은 下記의 理由에 따라 原告의 請求를 認定, 被告에 對해서 前記行爲의 禁止 및 損害賠償을 命令했다. A號物件은 兩面 編組織의 메리야스編布에 작은 突起를 붙이는데 loop를 벗길에 따라 pile調編 loop를 使用하고 있는 것에 對해서 本件 特許發明은 고무編組織의 메리야스編布에 작은 突起를 붙이는데 tuck編과 함께 tuck編糸를 斜線에 交差시켜 그 交差點을 突起시키는 것에 있고 兩者間에는 技術思想으로서의 差異가 認定되었다.

被告는 本件 發明은 메리야스編布에 작은 突起를 나오게 하여 고무等を 塗布한 것에 特許性

이 있는 것을 主張하고 있지만 本件 特許發明에 서는 작은 突起를 만드는 方法에 對해서 請求範圍에 記載되었고 必須要件으로 놓고 이것을 無視한 것은 認定되지 않는다. 또 고무編組織과 兩面編組織으로는 書證 및 證人의 證言에 依하면 通常用語의 使用例로서도 區別해서 使用되고 있는 것이 認定되지만 本件 公報中「고무編組織」의 用語가 兩面編組織을 包含한 狀態가 되고 記載 또는 이것을 示唆하는 記載도 認定되지 않으므로 兩面編을 갖고 고무編과 同一視하는 것은 안된다.

따라서 A號物件은 本件 特許發明의 技術的 範圍에 屬하지 않는 것으로 있고 이것을 利用한 本件 장갑이 本件特許權을 侵害한 것으로 主張한 被告의 葉書內容은 虛偽의 事實을 記載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證人의 證言에 依하면 原告는 被告의 葉書에 따라 A號物件을 使用한 本件 장갑의 賣上이 減少된 것이 認定되고 原告는 被告의 不正競争行爲에 따라 營業上의 利益을 害하게 된 것으로 말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被告는 A號物件이 本件 特許發明의 技術的 範圍에 屬한다고 主張하고 있는것은 辨論의 全趣旨에 보다 밝은 것으로 있으므로 被告는 將來에 같은 形態의 不正競争行爲를 行할 可能性이 있고 이같은 경우에는 原告는 營業上의 利益에 損害를 끼친다고 말한 것이 된다. ㉞